

## 【 5 】 양주군폐기물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개정조례안제의요구안

제출년월일 : 1994. 1. 6.

제 출 자 : 양주군수

1993년 12월 22일 의회로부터 이송되어 온 양주군폐기물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기도지사로 부터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제의지시가 있어 제의를 요구합니다.

이 유

1. 조례안 제3조 별표2에서 “다량 일반폐기물” 수집수수료를 1톤당 8,000원으로 정하고 있는바, 폐기물관리법 제14조에서 다량 일반폐기물을 다량배출자가 직접 운반, 처리하거나 동법 제17조에 의한 “일반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도록 되어 있고,
  2. 동법 제17조 제4항에 의거 “일반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을 운반, 처리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당해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기준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볼때 다량 일반폐기물에 대한 수수료는 시·도가 정한 요금기준 범위내에서 폐기물 처리업자와 다량 폐기물 배출업소간의 계약사항일 뿐 시·군조례로 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조례안에서 일반폐기물 이외에 “다량 일반폐기물”的 수수료를 규정한 것은 동법 제17조 제4항에 위배되는 것임.

## 【 6 】 1994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제출년월일 : 94. 1. 21.

제 출 자 : 양주군수

제안이유

### ○ 지방재정법 제77조1항